

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하였으나,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대상자		주소	발급기한	지참물	비고
	성명	생년월일				
1	여의주	1999.01.07	완정로64번길 7	2017.01.31	학생증 증명사진1매	
2	김한솔	1999.01.13	완정로64번길 7	2017.01.31	학생증 증명사진1매	
3	김정현	1999.01.14	완정로64번길 7	2017.01.31	학생증 증명사진1매	
4	하경현	1999.01.12	완정로65번안길 10	2017.01.31	학생증 증명사진1매	
5	유현지	1999.01.18	검단로540번길 59	2017.01.31	학생증 증명사진1매	

발급기한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3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(☎ 032-560-3356)

2016년 2월 19일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

